

정 관

대덕 GDS 주식회사

대덕GDS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상호 】본 회사는 대덕지디에스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EDUCK GDS CO.,LTD (약호: DAEDUCK GDS)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수출입업 및 이에 필요한 국내산업.
- ②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 ③비니루 물품 제조 판매업.
- ④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 ⑤부동산 임대업.
- ⑥독극물 수출입업.
- ⑦인터넷 및 정보통신사업.
- ⑧전구 및 조명장치, LED 조명관련 제조업.
- ⑨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장치 제조업.
- ⑩전 각호 부대되는 일체사업.

제 3 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 ①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둔다. <개정.2014.03.21>
- ②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신설.2014.03.21>

제 4 조 【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duckgd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2011.03.18>

제 2 장 주 식

제 5 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백원으로 한다.

제 6 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개정.2014.03.21>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2014.03.21>

-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2014.03.21>

-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삭제.2014.03.21>

6. <삭제.2014.03.21>

7. <삭제.2014.03.21>

8. <삭제>

③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2014.03.21>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2014.03.21>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2014.03.21>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2014.03.21>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2014.03.21>

제 6 조의 1 【 일반 공모 증자 등 】 <삭제>

제 6 조의 2 【 주식 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

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14.03.21>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2014.03.21>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6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6 조의 3 【 신주의 배당기산일 】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 시가발행 】 <삭제>

제 8 조 【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2014.03.21>

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 9 조 【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개정.2014.03.21>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개정.2014.03.21>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개정.2014.03.21>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개정.2014.03.21>

-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개정.2014.03.21>
- ⑤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2014.03.21>
- ⑥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개정.2014.03.21>
- ⑦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6조의 3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03.21>

제 10 조 【 명의개서 대리인 】

-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개정.2014.03.21>
- ②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증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③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제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개정.2014.03.21>

- ①주주, 질권등록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10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전항에 제기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 각항의 제출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 주권의 재교부 】 <삭제.2014.03.21>

제 13 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 사채의 발행 】 <신설.2014.03.21>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 전환사채의 발행 】 <개정.2014.03.21>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삼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삼백억원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2014.03.21>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6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율에 의한다.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삼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삼백억원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2014.03.21>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6조의 3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 소 집 】

- ①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가 결의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개정.2011.03.18>
-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1.03.18>
-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11.03.18>

제 17 조 【 의장 】

- ①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2011.03.18>
-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1.03.18>

제 17 조의 2 【 의장의 질서유지권 】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19 조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본 회사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의결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2 조 【 의결사항 】 <삭제.2014.03.21>

제 23 조 【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및 이 사 회

제 24 조 【 이사 및 감사의 수 】

- ①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이 회사의 감사는 2명 이내로 하되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제 24 조의 2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개정.2014.03.21>

-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개정.2014.03.21>
-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 임 기 】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 26 조 【 보 선 】

- ①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아니할 수 있다.
- ②사외이사가 해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 【 대표이사 등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8 조 【 이사의 직무 】

- ①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개정.2011.03.18>
- ②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1.03.18>

제 29 조 【 경업금지 】 <삭제.2014.03.21>

제 30 조 【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 ①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개정.2011.03.18>
- ②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31 조 【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1.03.18>

제 32 조 【 의결방법 】

-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서 성립되며 출석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3 조 【 이사회 의결사항 】 <삭제.2014.03.21>

제 34 조 【 의사록 】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 【 상임감사 】 <삭제.2014.03.21>

제 36 조 【 감사의 임무 및 감사록 】

-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 【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8 조 【 고문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써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2011.03.18>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9 조의 2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개정.2014.03.21>

-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03.18>
 - 1.대차대조표.
 - 2.손익계산서.
 -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2014.03.21>
-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2014.03.21>
-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03.18> <개정.2014.03.21>
-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1.03.18> <개정.2014.03.21>
-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03.18> <개정.2014.03.21>

제 39 조의 3 【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2011.03.18> <개정.2014.03.21>

제 40 조 【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등.

4. 배당금.

5. 임의 적립금.

제 40 조의 2 【 주식의 소각 】 <삭제.2014.03.21>

제 41 조 【 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4.03.21>

②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 42 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규정 】

①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만,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2014.03.21>

②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 【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02.30 1988.03.18 1989.03.17 1990.03.16 1994.03.18 1996.03.15 1997.03.14 1998.03.20

1999.03.19 2000.03.17 2001.03.16 2002.03.15 2009.03.20 2010.03.19 2011.03.18 2014.03.21